

# 도시관리계획(안) 개요

안 건 명	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(안)		
입 안 자	부산광역시장	위 치	해운대구 반여동 1167번지 일원
내 용	○ 용도지역 변경결정 - 자연녹지지역 → 제3종일반주거지역 : 73,240.0㎡		
사 유	○ 해운대구 반여동 1167번지(명장공원) 일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에 따른 비공원시설(주택건설용지)의 용도지역 변경		

## 위 치 도

